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

- 1. 안전방재처-4025(2016.8.1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과 관련입니다.
- 2.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령, 기술기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전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교육기간 : 2016.08.18 ~ 08.24
  - 나. 교육장소 : 각팀 사무실
  - 다. 교육대상 : 종합관제센터 전직원(193명)
  - 라. 교육방법 : 집합(대면) 교육 후 전파교육 날인부 서명, 지원팀 제출
    - 해당일 교육 미이수자 전파교육 실시
  - 마. 교 관 : 각팀 팀장
  - 바. 교육내용 : 상세내용 "붙임참조"
    - . - 공사사규 또는 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등 변경 필요시 안전방재처 사전협의 후 진행
    - 요구사항(관계법령) 주관부서에서는 법률 개정사항 모니터링 및
- . 반영철저

- 붙임 :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1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16.8.10 일부개정) 1부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요구사항(관계법령) 주관부서 현황 1부  
 5. 교육 날인부 서명 1부. 끝.

과장 심순정

부장 이부형

팀장 서명석

센터장 08/18  
이용만

협조자

시행 종합관제센터-3724 (2016.08.18.)

접수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mrt.co.kr

전화 2709 전송 02-6311-2370 / 1960926@smrt.co.kr / 대시민공개